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의 초과근무에 대해 일한 만큼 보상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개선하고,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며,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예방하기 위해 징계의결 요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전문가로 장기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관련 수당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5항 본문 중 “대신하거나 9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를 “대신하여”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일에 4시간, 1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기관 또는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적발했을”을 “적발하거나 1회 적발 시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관리업무수당)”을 “(관리업무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제2호에 따른 복수직급 공무원 등에게 별표 13의2에 따라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급대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4항의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8항을 적용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의 세부 기준과 부정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 중 “각급 행정기관에 설치된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을 “민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별표 11 제3호자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급액			
근무기간	월 지급액		
	수석전문관	전문관	부전문관
1년 미만	310,000원	250,000원	165,000원
1년 이상 2년 미만	335,000원	280,000원	185,000원
2년 이상 3년 미만	400,000원	350,000원	245,000원
3년 이상 4년 미만	525,000원	460,000원	365,000원
4년 이상 7년 미만	680,000원	620,000원	515,000원
7년 이상	835,000원	780,000원	670,000원

(비고)

- 부전문관에서 전문관, 전문관에서 수석전문관으로 승진 시 전문직무급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나) 가산금

근무기간 10년이상인 전문직공무원에게는 월 10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근무기간 산정

- 근무기간은 수석전문관, 전문관 또는 부전문관으로 임용(전직 또는 신규채용을 포함한다)되어 근무한 날부터 계산한다.
-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직 제한기간 계산 시 포함되는 기간은 전문직무급 지급액의 근무기간 계산 시에도 합산하여 계산한다.

별표 13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직무급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11 3. 특수업무분야 자. 전문직무급의 근무기간 산정에 대한 개정사항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제36489호 2026.6.30.) 개정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까지 전문직위 전문관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13의2]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 기준(제17조의2제4항 관련)

구분	내용
지급액 산식	(월 시간외근무시간 합계 - 25시간) × 초과근무보전수당 단가
초과근무 보전수당 단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일반직 4급 10호봉 봉급액의 55%) × (1/209) × 150%

비고. 월 시간외근무시간 산정 시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
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 3. (생략)

⑤ · ⑥ (생략)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⑨ (생략)

1개월-----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

----- 기관

또는 부서별로 시간외근무수당

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실태---.

(8) -----

적발하
거나 1회 적발 시 부정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인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

③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② (생략)

③ 별표 11의 특수업무수당(교육공무원과 재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제외하고, 제14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 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 받는 공무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의2제2호에 따른 복수직급 공무원 등에게 별표 13의2에 따라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급대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4항의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8항을 적용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초과근무보전수당의 세부 기준과 부정수령한 경우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illegible]

3. ~ 18. (현행과 같음)

④ ~ ⑭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8399